

#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25,068,870	24,752,066
일반회계	764,924,684	22,947,741
특별회계	60,144,186	1,804,326
공기업특별회계	33,387,566	1,001,6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975,076	599,2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412,490	402,375
기타특별회계	26,756,620	802,6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90,500	41,71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48,370	88,451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77,170	11,31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237,610	67,128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772,000	113,1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5,000	6,750
도시개발특별회계	14,310	429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64,100	10,923
중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528,229	15,847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317,806	159,53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51,110	73,533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7,130,415	213,91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190,82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